

#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47
----------	------

제출년월일 : 2007. 11. .  
제출자 : 안산시장

## □ 제안이유

- 오수·분뇨 및 중수도 관련 사항이 「하수도법」으로 편입·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관거 준설, 하수도사용료 및 분뇨·오수의 수수료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하수관거 준설을 통한 침수예방 및 하천방류수의 수질을 개선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함.  
(안 제2조).
- 나.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및 일시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하수관거 준설,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와 배수설비 준공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제14조·제15조).
- 라. 중수도의 설치신고, 관리, 용도제한, 수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마.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바. 하수배출량의 산정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 사. 공공하수도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 아. 분뇨의 수집·운반의 대행 및 수탁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 자. 사용료,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감면, 이의신청, 가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 차.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안 및 학교급식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별표 1).

**개정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하수도법」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38조, 제41조, 제61조 및 제65조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
-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 「건축법」 제18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
- 「지방세법」 제73조, 제75조 및 제79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7. 11. 7 ~ 2007. 11. 17.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안산시 소비자 정책심의회 심의결과(2007. 11. 2)
- 표준조례안(환경부 생활하수과-2013.2007. 7. 6, 경기도 상하수관리과-6069,2007. 8.14)

#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분뇨처리시설 및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하수관거와 공작물·시설물 등의 공공하수도
2.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하수관거의 설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와 하수관거의 준설
3. 차집관거를 제외한 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 등 기타 공작물의 설치, 개축, 확장, 수선 및 유지관리

**제4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시장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비
2. 차집관거의 중계펌프장, 하수관거의 설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비
3. 간선 하수관거의 설치, 개조, 수선 및 유지관리비 및 하수관거의 준설비
4. 하수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의 설치, 개조 및 유지·관리비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하수도정비 시책사업 및 그밖에 공공하수도의 설치, 정비 및 유지관리, 기타 비용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신고
  2.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하수관거의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하수관거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복구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법 제26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중수도사업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및 평면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법 제26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을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시장은 중수도의 신고 및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 시행규칙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

**제11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공업용수, 화장실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에 따른 채수장소는 중수도의 사용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저수조의 출구 부근으로 한다.

③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의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서류를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제13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배수 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설치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 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 산출금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함께 제출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락,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의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 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6조(공공하수도의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업종구분표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③ 시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라 수질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신고서를 접수할 때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수도 사용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 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료의 징수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 하여야 할 당월 전의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밖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

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를 설치 한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에서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배출량을 적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하여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 ⑤ 계측장치를 설치한 이후에는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되,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 ②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 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보 또는 지역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 발생량 (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사용승인 시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사용승인 전으로 한다.
- ② 제23조의 태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태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2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태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태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태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의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 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 1. 하수발생량 산정

- 가. 하수발생량은 태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 발생량 원단위(태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하수량과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하수량을 비교하여 많은 양을 하수발생량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을 산정시 태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하수관거 설치에 필요한 공사를 직접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부과하고 착공 전에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분뇨처리 의무의 제외지역)**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무 제외 지역은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전역으로 한다.

**제25조(분뇨의 수집·운반의 대행 등)**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법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업자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월별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실적을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및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 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2.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대행업자는 제2호에 따라 배출자로부터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별지 제5호서식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수집·운반된 분뇨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에서 위생 처리하는 경우에는 분뇨를 수집·운반할 때 배출자로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비(이하 “처리비”라 한다)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및 처리비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처리비 징수방법 등)** ① 처리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징수한다.

1.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그 밖에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처리장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1리터당 1원의 처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금액에 10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원단위는 절사 한다.

③ 시장은 처리장에 분뇨 등이 반입될 때에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전월의 분뇨수집·운반 처리실적을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처리장 사용료를 별표 7의 위생처리장사용권으로 징수한다.

**제28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3.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시장은 중수도 사용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9조(이의신청)** ①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가산금 및 독촉)** 시장은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하수도사용료는 2008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삭제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삭제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안산시 중수도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소관 실·과		하 수 과
입 안 자	설·과장 직위·성명	하수과장 지병구
	담당·팀장 직위·성명	하수행정담당 송순복
	담당자 성명·전화	김윤숙 (행정 2458)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업종구분표**  
(제16조제2항)

1.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업 종	구 分		사 용 요 율
		사용량 (m <sup>3</sup> /월)	m <sup>3</sup> 당 단가 (원)
가 정 용		1~20	110
		21~40	160
		41 이상	240
일 반 용		1~50	200
		51~100	250
		101~300	320
대 중 탕 용		301~1,000	350
		1,001 이상	360
		1~1,000	180
산 업 용		1,001~1,500	210
		1,501~2,000	260
		2,001이상	300
	톤당		230

## 2. 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표

구 분 업 종	구 분 내 용
가 정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li> <li>·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의 소매점 등으로 1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li> <li>·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인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안마시술소</li> <li>·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li> <li>· 양로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의함)</li> <li>· 아동양육시설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의함)</li> <li>· 기숙사</li> </ul>
일 반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 : 입주전까지, 운반급수 : 최종 단계요율 적용)</li> <li>·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 (최종단계 요율적용)</li> <li>·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다만, 학교(초·중·고)에서 급식을 위하여 별도 계량기(수도)를 설치한 경우 그 요금은 1단계를 적용한다]</li> </ul>
대 중 탕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욕장업(「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li> <li>· 호텔내 목욕장업(호텔과 별도의 급수관 사용시)</li> </ul>
산 업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li> <li>· 두채 채배업소</li> </ul>

- 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2. 일반용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을 적용한다.
3.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별표 2]

##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제16조제3항)

□ 대상항목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측정 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 × 시간당 폐수배출량(m<sup>3</sup>/시간)]  
$$\times \frac{1}{1000} (\text{kg/g}) \times 1\text{일조업시간(시간/일)} \times 30\text{일} \times \text{kg단가(원/kg)}$$
-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 3]

##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제20조제1항)

(365일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 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 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 < 계산 예 >

-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 100(\text{만원}) \times (6/100) \times (183/365) = 3(\text{만원})$

[별표4]

##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제2호)

(세계곱미터/일)

구 분	최초 행정 행위시 오수발생량(A)	1차 증축·용도변경				2차 증축·용도변경			
		증가량(B)	총오수량(C) (A+B)	부과량(D)	적용방법	증가량(E)	총오수량(F) (C+E)	부과량(G)	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 변경	0 ※기존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3	-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6	9	-	(E)>10 전체부과
						12	15	12	(B)+(E)<10 미부과
		7	7	-	(B)<10 미부과	2	9	-	(B)+(E)>10 초과량부과
						7	14	4	(E)>10 전체부과
						11	18	11	(B)+(E)<10 미부과
		11	11	11	(B)>10 전체부과	4	15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7	18	-	(A)+(B)+(E)<10 미부과
						11	22	11	(A)+(B)+(E)>10 초과량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5 (미부과)	3	8	-	(A)+(B)<10 미부과	1	9	-	(E)>10 전체부과
						7	15	5	(A)+(B)+(E)>10 초과량부과
						12	20	12	(B)>10 전체부과
		7	12	2	(A)+(B)>10 초과량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6	18	-	(B)>10 전체부과
	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11	16	11	(B)>10 전체부과	12	24	12	(A)+(B)+(E)<10 미부과
						1	17	-	(A)+(B)+(E)>10 초과량부과
						6	22	-	(E)>10 전체부과
		3	13	-	(B)<10 미부과	12	28	12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16	-	기준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7	17	-	(B)<10 미부과	6	19	-	(B)>10 전체부과
						12	25	12	(B)>10 전체부과
						2	19	-	(B)>10 전체부과
		11	21	11	(B)>10 전체부과	6	23	3	(B)>10 전체부과
						12	29	12	(B)>10 전체부과
						2	23	-	(B)>10 전체부과
						6	27	-	(B)>10 전체부과
						12	33	12	(B)>10 전체부과

-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별표 5]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제2호)

### ○ $m^3$ 당 원인자부담금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m^3/\text{일})} \times \alpha$$

▷  $\alpha =$

$$\left( 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100} \right)^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총사업비는 하수처리장(공공하수처리시설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로 사업비를 포함한다) 및 하수관거 등 시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총사업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때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지방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 ※ 공공하수처리시설용량은 시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을 합한 것으로 한다.
- ※ 개별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의 경우에는 총사업비에서 관거 설치비는 제외한다.

[별표 6]

## 분뇨 등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제26조제1항제1호)

구 분	부과기준	수집·운반 요 금	비 고
분뇨	수거식화장실	18리터당 220원	수집·운반요금중 1리터당 1원은처리비임
	단독정화조·오수 처리시설	750리터까지 1리터초과마다 13,340원 10.8원	

\*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처리비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한다

[별표 7]

## 위생처리장 사용권 (제27조제5항)

NO. 000001  위생처리장 사용권  (보관용)  일금 1,000원  안산시장	NO. 000001  위생처리장 사용권  (제출용)  일금 1,000원  안산시장
---	---

[별표 8]

## 중수도 사용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기준

(제28조제2항)

업종	구분	감면비율(%)
		중수도
가정용		65
일반용		65
대중탕용		30
산업용		65

주) 감면비율은 수도요금을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 〈계산 예〉

1. 수도요금이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20%인 경우 최종 수도요금은?

$$= \text{수도요금}(100\text{원}) - \text{감면액}(100\text{원} \times 20\% = 20\text{원})$$

$$= 80\text{원} \text{ (최종 수도요금)}$$

[별지 제1호서식]

중수도 사용 계획서 (제9조제1항제1호)

안산시장 귀하

년 월 일

사업자 주 소

성 명

(인)

(전화)

중수도 사용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건축 장소				
2. 설계자	주소(상호)			
	성명	(인) (전화)		
건축물 계획	건축물 명칭		부지면적	m <sup>2</sup>
	주요 용도		건축면적	m <sup>2</sup>
	총 수	지상 층, 지하 층	연 면 적	m <sup>2</sup>
구 조		공사종별	신축, 증축, 용도변경	
4. 공사 예정		년 월 일 ~	년 월 일	
5. 도 사 계 획	급수관 구경		6. 중 수 사 용 계 획	사용 용도
	일최대사용량			중수도시설용량
	년간총사용량			일 최 대사용량
	기 타			년간중수도사용량
비 고				

### [별지 제2호서식]

## 중수도 사업개요서(제9조제1항제2호)

안산시장 귀하		년 월 일		
사업자 주 소 성 명 (전 화) (인)				
중수도 사업개요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건 축 장 소				
2. 시 공자		주소(상호) 성 명 (인) (전화)		
3. 건축물 용도		5. 연 면적 <span style="float: right;"><math>m^2</math></span>		
4. 주 요 용 도		6. 급수환경 <span style="float: right;"><math>m/m</math></span>		
8. 중수사용량		$m^3$		
9. 원 수 계		오 수 $m^3/d$	10. 중 수	용 도
		잡배수 $m^3/d$		시설용량 $m^3/d$
		기 타 $m^3/d$		시설면적 $m^2$
11. 처리 개 요 기 술		설치위치 지상층, 지하층		
		처리시설 의 공종을 기입(첨부)		
비 고				

[별지 제3호서식]

중수도 설치 확인서 (제9조제2항)

년 월 일

안산시장(인)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년 월 일부로 제출된 중수도 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중수도가 설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1. 건축물 명칭 및 주소	
2. 중수도 사용계획서 승인번호	
3. 중수도 사업개요서 승인번호	
4. 중수도 시설현황	

#### [별지 제4호서식]

##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 치 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 공 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배 수 설 비 현 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시·군·구		읍·면·동	번지(통반)		
	관종	PVC관, PE관, 흠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경	ø mm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m <sup>3</sup> /일		※ 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 공 검 사	검사항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 )	검사일자 (   .   . )		검사일자 (   .   . )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 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별지 제5호서식]

영 수 증						
(임소보관용)						
No. 정화조고유번호:						
주소	동 번지					
성명						
구분	수거량	단가 (원)	금액(원)			
			기본	초과	계	
정화조 청소 수수료	ℓ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귀하						

※본 영수증은 1년간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영 수 증						
(시청제출용)						
No. 정화조고유번호:						
주소	동 번지					
성명						
구분	수거량	단가 (원)	금액(원)			
			기본	초과	계	
정화조 청소 수수료	ℓ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귀하						

※본 영수증은 1년간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영 수 증						
(민원인보관용)						
No. 정화조고유번호:						
주소	동 번지					
성명						
구분	수거량	단가 (원)	금액(원)			
			기본	초과	계	
정화조 청소 수수료	ℓ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귀하						

※본 영수증은 1년간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647
----------	------

제안년월일 : 2007. 12. 12.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 1. 수 정 이 유

- 관련없는 조문을 삭제하고, 법령 등 인용 조항 및 문구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함.

## 2. 주 요 골 자

- 관련없는 조문을 삭제함(안 제4조).
- 인용된 조례 조문을 수정함(안 제5조제2항, 안 제17조제2항, 안 제18조제2호, 안 제19조, 안 제21조제2항, 안 제23조제2항).
- 법령 인용 조항 및 문구를 명확히 함(안 제14조제1항).

#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내지 제31조를 제4조내지 제30조로 하고, 제4조제2항제2호(원안의 제5조제2항제2호) 중 “제13조제1항제3호”를 “제12조제1항제3호”로, 제16조제2항(원안의 제17조제2항) 중 “제6조”를 “제5조”로, 제17조제2호나목(원안의 제18조제2호나목) 중 “제5조제1항제2호”를 “제4조제1항제2호”로, 제17조제2호나목(원안의 제18조제2호나목) 중 “제5조제1항제3호”를 “제4조제1항제3호”로, 제18조제1항(원안의 제19조제1항) 중 “제18조”를 “제17조”로, 제20조제2항(원안의 제21조제2항) 중 “제23조”를 “제22조”로, 제22조제2항제2호(원안의 제23조제2항제2호) 중 “제21조제1항제4호”를 “제20조제1항제4호”로 각각 한다.

제13조제1항(원안의 제14조제1항) 중 “「건축법」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필요한”을 “「건축법」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대상인”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16조제2항)”을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16조제3항)”을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20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제2호)”를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제2호)”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제2호)”를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제2호)”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제26조제1항제1호)”를 “(제25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제26조제1항제1호)”를 “(제25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8의 제목 중 “(제28조제2항)”을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목 중 “(제9조제1항제1호)”를 “(제8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목 중 “(제9조제1항제2호)”를 “(제8조제1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목 중 “(제9조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같은 별지 서식 본문 중 “제9조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 조문대비표

## **조문대비표**

## **조문대비표**

##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u>제22조(생략)</u>	<u>제21조(원안 제22조와 같음)</u>
<u>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u>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u>제21조제1항제4호</u> 에서 규 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 ④ (생략)	<u>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u> ① (원안과 같음) ② (원안과 같음) 1. (원안과 같음) 2. ..... ..... <u>제20조제1항제4호</u> ..... ..... ③ ~ ④ (원안과 같음)
<u>제24조 ~ 제31조(생략)</u>	<u>제23조 ~ 제30조(원안 제24조부터 제31조 까지와 같음)</u>